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6. 23.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고제로 1002-16 등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이동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725-4, 749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고제로 1002-16	20210623	20091228	행정구역 고제면을 지나가는 도로라 하여 고제로라 명명	건물번호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207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밤티제로 444	20210623	20091228	밤티제라는 지명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512-1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고대길 18	20210623	20090401	고대라는 사람이 마을을 열었다고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69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병곡길 383	20210623	20091228	서쪽 산수리 골짜기와 나란히 짝을 이루므로 붙여진 행정구역 병곡리를 반영한 도로	건물번호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1067-6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월포1길 141-425	20210623	20090401	수월천 소에 달이 비치므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382-9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산2길 90	20210623	20090401	중산길의 시점으로부터 두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475-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8길 86	20210623	20160420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거창군 공고 제2021-922호

거창군계획시설(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공사완료 공고

거창군 고시 제2021-62호(2021. 4. 14.)로 실시계획 인가된 거창군계획시설(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4일

거창군수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산196-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시설:수도공급설비)
  - 명 칭 : 거창읍 가지리 배수지 신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의 면적 : A=973.0m<sup>2</sup>
  - 사업의 규모 : 배수지 물탱크 설치 2개소, 경량철골구조(컨테이너) 28.0m<sup>2</sup>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 명 : 거창군수(수도사업소장)
4. 사업시행기간 : 2021. 04. 14. ~ 2021. 10. 31.
5.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나.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 첨
4. 공고기간 : 2021. 6. 23. ~ 7. 7.(15일간)
5. 공고 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6. 고지서 재교부 등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환경과 TEL(055) 940 - 34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22일

거창군수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23일

거창군수

##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및 필수조례를 일괄개정하여 민원인의 권익 보호 및 법령 적합성 등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정비

- 1) 정부합동평가 대상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 삭제(안 제1조·제2조)

가)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

나) 개정 조례 2건

(1)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행정과)

(2)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농업기술센터)

- 2) 수수료를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3조·제4조)

가) 수수료 납부수단을 제한⇒ 납부수단 다양화 또는 해당규정 삭제

나) 개정 조례 2건

(1) 「거창군 수입증지조례」(재무과)

(2)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건설과)

나. 법제처 필수조례 정비

1) 정부합동평가 대상 필수조례 보완(안 제5조)

가)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1) 현행: 특별교통수단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규정

(2) 변경: 보행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특별교통수단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한다로 기능 대행 규정 명확화

나) 「거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1) 위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전에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만 인용하던 것을 위임 시행령·시행규칙을 명시

3. 제정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기획예산담당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다. 우편번호: 51032, 전화/팩스 : 055-940-3073/3029

이메일: sun815@korea.kr

라.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5. 입법예고문 게재: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붙임]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
----------	-------

제출연월일	2021. 8.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제안 이유**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및 필수조례를 일괄개정하여 민원인의 권익 보호 및 법령 적합성 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정비

1) 정부합동평가 대상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 삭제(안 제1조·제2조)

가)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

나) 개정 조례 2건

(1)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행정과)

(2)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농업기술센터)

2) 수수료를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3조·제4조)

가) 수수료 납부수단을 제한⇒ 납부수단 다양화 또는 해당규정 삭제

나) 개정 조례 2건

(1) 「거창군 수입증지조례」(재무과)

(2)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건설과)

나. 법제처 필수조례 정비

1) 정부합동평가 대상 필수조례 보완(안 제5조)

가)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1) 현행: 특별교통수단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규정

(2) 변경: 보행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특별교통수단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한다로 기능 대행 규정 명확화



나) 「거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1) 위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전에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만 인용하던 것을 위임 시행령·시행규칙을 명시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나) 예고결과:

3) 비용추계서:

4) 성별영향평가:

##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개정한다.

제2조(「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후단을 삭제한다.

제3조(「거창군 수입증지조례」의 개정)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 납부방법)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의 개정)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따르되 군 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개정)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전자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2호를 각각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보행편의증진위원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거창군 보행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7조(「거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1항 및 제24조제4항”을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목록

조례명	규정내용(문제점)	정비방향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b>제9조(협약체결 등)</b>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u>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u> ②~③ (생략)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가 있으므로 <b>공증의무 규정 및 수탁자 비용부담 규정을 삭제해야 함</b>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b>제18조(위탁협약 및 지정)</b>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운영주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u>이 경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u> ②(생략)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가 있으므로 <b>공증의무 규정 및 수탁자 비용부담 규정을 삭제해야 함</b>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b>제8조(허가 수수료의 징수)</b>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3항의 허가수수료 납부 기준은 별표 3에 따르되 <u>군 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u>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b>납부수단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다양한 납부방법을 규정해야 함</b>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b>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b> ① <u>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전자</u>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는 현금,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있도록, 납부수단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다양한 납부방법을 규정해야 함

□ 법제처 필수조례

법령명	법령위임 주요내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p>(제8조의3제2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은 지역별 보행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p> <p>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에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7조의2에 따른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li> <li>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li> <li>3. 그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li> </ol> <p>② 지역위원회의구성·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호신설 2021.4.28.)